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. 10. 20 선고 2020가단65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10. 2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양양군 C 전 849m²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양등기소 1995. 5. 3. 접수 제255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판결)

판사박민지

별지